###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안호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439 발의연월일: 2024. 12. 12.

발 의 자: 안호영·정을호·박희승

이병진 • 박홍배 • 윤준병

이학영 · 이춘석 · 이원택

박 정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화재·붕괴·폭발·교통사고·화생방사고·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여 우리 나라 연근해어업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지만, 방사능 오염사고 등이 사 회재난으로 규정되지 않아 방사능 오염 사고와 같은 사회재난이 발생 하더라도 그 피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음.

이에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인정하여 어민을 보호하고 피해를 복구하며 어업의 안전성 향상에 기 여하고자 함(안 제3조제1호나목).

법률 제 호

##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호나목 중 "인한 피해"를 "인한 피해,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"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3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"재난"이란 국민의 생명ㆍ신	1
체·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	
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	
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	
가. (생 략)	가. (현행과 같음)
나. 사회재난: 화재・붕괴・	나
폭발 • 교통사고(항공사고	
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)	
· 화생방사고 · 환경오염사	
고・다중운집인파사고 등	
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	
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	
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	
반의 마비, 「감염병의 예	
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	
에 따른 감염병 또는 「가	
축전염병예방법」에 따른	
가축전염병의 확산, 「미	
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	
한 특별법」에 따른 미세	
먼지, 「우주개발 진흥	

법」에 따른 인공우주물체 의 추락·충돌 등으로 <u>인</u> 한 <u>피해</u>

-----인 한 피해, 원전 오염수 방 류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 해

2. ~ 13. (현행과 같음)

2. ~ 13. (생 략)